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식품안전관리 업무 정원 15명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원 6명(5급 1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연구사 2명)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원 8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00.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로기기심사부의 평가대상 조직인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의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정원 15명(7급 4명, 8급 5명, 9급 5명, 연구사 1명)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정원 16명(8급 2명, 9급 2명, 연구사 12명)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정원 18명(연구관 4명, 연구사 14명)의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하여 설치한 빅데이터정책분석팀을

폐지하고, 사이버조사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식품·의약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인공지능 업무 추진을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공지능데이터기획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중 3명(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3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수입식품검사소 간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리운영직 정원 2명(7급 2명)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리운영직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과학기술직군·행정직군 7급 정원 2명과 9급 정원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빅데이터정책분석팀을”을 “인공지능데이터기획팀을”로 하고, 종전의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인공지능데이터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식품·의약품등의 안전 관련 인공지능, 데이터 및 통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기획·조정
2. 식품·의약품등의 안전 관련 인공지능 기술적용 및 활용
3. 식품·의약품등의 데이터 분석센터 및 인공지능 관련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4. 식품·의약품등의 공공데이터 수집, 표준화 및 품질관리, 개방 및 활용
5. 식품·의약품등의 인공지능, 데이터, 통계 관련 교육 및 문화·확산, 전문인력 양성
6. 식품·의약품등의 통계 개발·개선 및 국가승인통계 등의 발굴 관리

7. 데이터·통계기반 정책분석 및 식의약 통계 품질관리

8. 식의약안전백서 및 통계연보 등 간행물 발간

제17조제9호 중 “원 내 연구개발사업”을 “연구개발사업”으로 한다.

별표 2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북항수입식품검사소의 관할구역란 중 “북항(신선대 부두, 감만 부두, 신감만 부두는 제외한다)”을 “신감만부두, 감만부두(1선석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란의 신선대수입식품검사소의 관할구역란 중 “부두, 신감만 부두”를 “부두(1선석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란의 양산수입식품검사소의 관할구역란 중 “울주군,”을 “울주군”으로 하고, 같은 란의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 감천항, 부산광역시 서구(암남동으로 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649”를 “643”으로, 일반직 계 “648”을 “642”로, 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전산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11”을 “110”으로,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39”를 “38”로, 보건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01”을 “99”로 하고, “기계운영주사보 1”를 삭제하며, “사무운영주사보 1”를 삭제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663”을 “657”로, 일반직 계 “662”를 “656”으로, 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전산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15”를 “114”로,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39”를 “38”로, 보건연구사·공업연구

사 또는 기록연구사 “101”을 “99”로 하고, “기계운영주사보 1”를 삭제하며, “사무운영주사보 1”를 삭제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33”을 각각 “429”로, 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17”을 “16”으로, 약무주사·의료기술주사·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10”을 “9”로, 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231”을 “229”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904”를 각각 “896”으로, 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의료기술주사 또는 전산주사 “104”를 “102”로, 행정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약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07”을 “106”으로, 행정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수의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보건연구사 “103”을 “102”로, 행정서기·식품위생서기 또는 의료기술서기 “136”을 “134”로, 보건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95”를 “194”로, 사무운영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1)의 평가기간란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1)을 삭제하고, 2), 3)을 각각 1), 2)로 하며, 평가기간란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총리령 제1640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을 삭제하고, 총리령 제1799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월 31일까지로 변경하며, 제3조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월 31일까지로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공지능데이터기획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원 6명(5급 1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의 정원 12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연구사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공지능데이터기획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공지능데이터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인공지능데이터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정보화담당관이 분장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기획조정관) ① (생략)	제4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정보화담당관·고객지원담당관·비상안전담당관 및 <u>빅데이터정책분석팀</u> 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정보화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u>빅데이터정책분석팀장</u> 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식품위생사무관·수의사무관·약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 ----- ----- <u>인공지능데이터기획팀</u> 을 ----- ----- ----- ----- ----- ----- <u>인공지능데이터기획팀장</u> ----- ----- ----- ----- ----- -----.
③ ~ ⑨ (생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⑩ <u>빅데이터정책분석팀장</u>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⑩ <u>인공지능데이터기획팀장</u> ----- ----- -----.

1. ~ 9. 삭 제

<신 설>

1. 식품·의약품등의 안전 관련 인공지능, 데이터 및 통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기획·조정
2. 식품·의약품등의 안전 관련 인공지능 기술적용 및 활용
3. 식품·의약품등의 데이터 분석센터 및 인공지능 관련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4. 식품·의약품등의 공공데이터 수집, 표준화 및 품질관리, 개방 및 활용
5. 식품·의약품등의 인공지능, 데이터, 통계 관련 교육 및 문화·확산, 전문인력 양성
6. 식품·의약품등의 통계 개발·개선 및 국가승인통계 등의 발굴 관리
7. 데이터·통계기반 정책분석 및 식의약 통계 품질관리
8. 식의약안전백서 및 통계연보

- 제17조(기획조정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 략)
 9. 원 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조정 및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검토
 10. ~ 16. (생 략)
- 총리령 제1640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 제1조 (생 략)
- 제2조 (생 략)
- 총리령 제1799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 제1조 (생 략)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사이버조사팀장은 2025년 1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등 간행물 발간

- 제17조(기획조정과) -----
-----.
1. ~ 8. (현행과 같음)
 9. 연구개발사업-----

 10. ~ 16. (현행과 같음)
- 총리령 제1640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 제1조 삭 제
- 제2조 삭 제
- 총리령 제1799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 제1조 (현행과 같음)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2027년 1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

으로 증원되는 별표3의2 정원	-----
3명(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	-----
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3명)	-----
은 2025년 1월 31일까지 존속	- 2026년 1월 31일까지 존속
한다.	한다.

신·구정원대비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649</u>	<u>643</u>	-6
·	·	·	
·	·	·	
일반직 계	<u>648</u>	<u>642</u>	-6
·	·	·	
·	·	·	
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약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의무사무관·전산사무관·수의	<u>111</u>	<u>110</u>	-1
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	·	·	
·	·	·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u>39</u>	<u>38</u>	-1
보건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u>101</u>	<u>99</u>	-2
기계운영주사보	<u>1</u>	<삭 제>	-1

<u>사무운영주사보</u>	<u>1</u>	<u><삭 제></u>	-1
.	.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63	657	-6
일반직 계	662	656	-6
행정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약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수의 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15	114	-1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39	38	-1
보건연구사 · 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01	99	-2
<u>기계운영주사보</u>	<u>1</u>	<u><삭 제></u>	-1
<u>사무운영주사보</u>	<u>1</u>	<u><삭 제></u>	-1

.	.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33	429	-4
일반직 계	433	429	-4
.	.	.	
.	.	.	
행정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약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17	16	-1
.	.	.	
.	.	.	
약무주사 · 의료기술주사 · 보건 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10	9	-1
.	.	.	
.	.	.	
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231	229	-2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904</u>	<u>896</u>	-8
일반직 계	<u>904</u>	<u>896</u>	-8
·	·	·	
·	·	·	
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 주사·의료기술주사 또는 전산주사	<u>104</u>	<u>102</u>	-2
·	·	·	
행정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 약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107</u>	<u>106</u>	-1
행정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 수의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보건연구사	<u>103</u>	<u>102</u>	-1
·	·	·	
행정서기·식품위생서기 또는 의료기술서기	<u>136</u>	<u>134</u>	-2

·	·	·	
·	·	·	
보건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u>195</u>	<u>194</u>	-1
·	·	·	
사무운영서기보	<u>4</u>	<u>3</u>	-1